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47,380	6,744	6,176	8,076	25,813	0	452	0	120
국비	31,157	5,324	3,982	3,607	18,244	0	0	0	0
시·도비	6,147	664	682	2,384	2,405	0	13	0	0
시·군·구비	10,076	756	1,512	2,085	5,164	0	439	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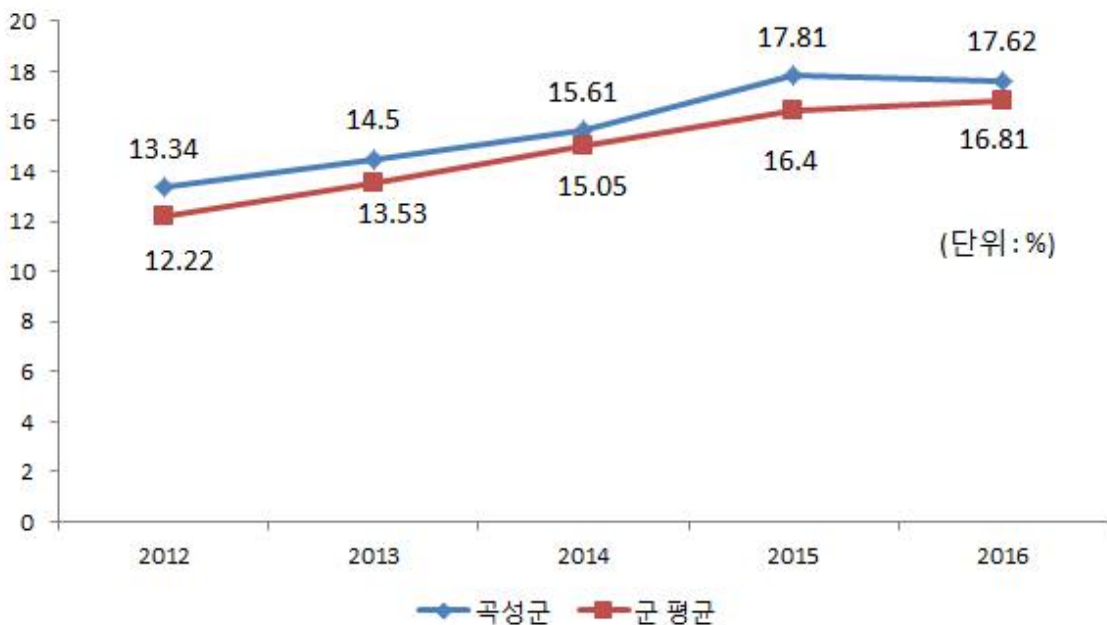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39,817	249,588	264,017	265,459	268,932
사회복지분야(B)	31,990	36,189	41,220	47,273	47,38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3.34	14.5	15.61	17.81	17.62
인구수(C)	30,878	31,009	30,732	0	30,40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36	1,167	1,341	47,273,026	1,5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68,932	38,784	14.42%	
민간경상보조 (307-02)		7,131	2.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220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849	0.3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028	1.1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766	3.63%	
민간자본보조 (402-01)		17,791	6.6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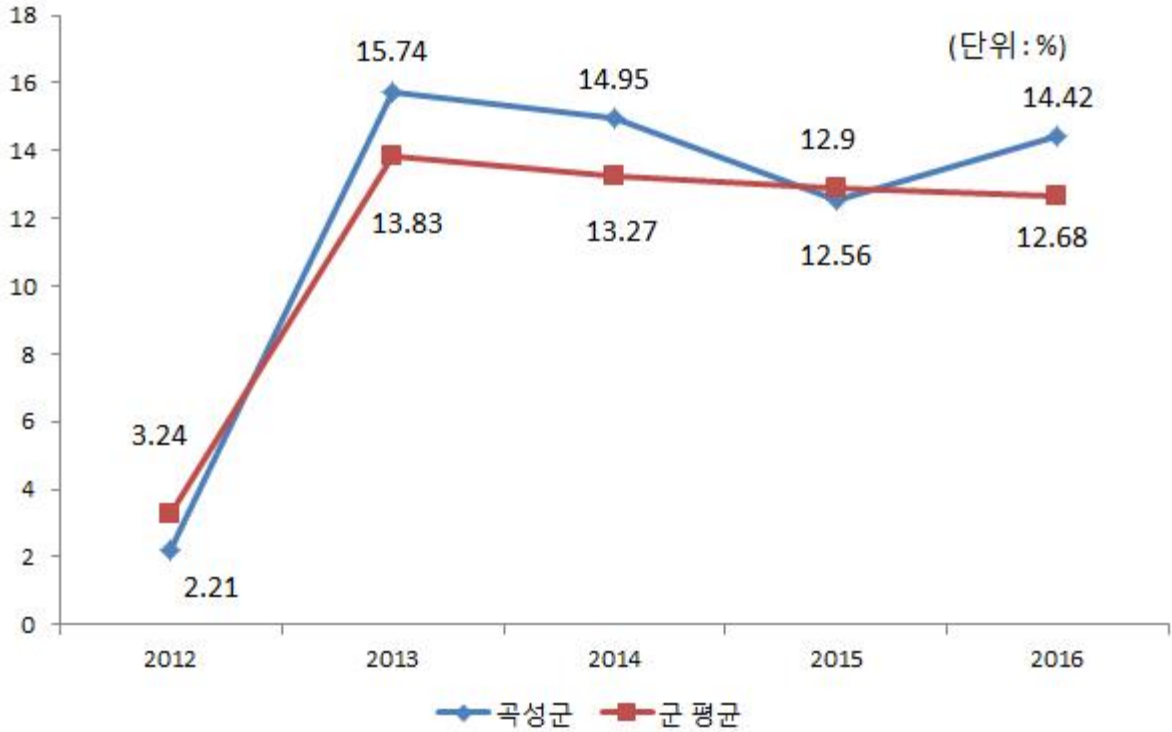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9,817	249,588	264,017	265,459	268,932
지방보조금(민간)	5,293	39,292	39,468	33,347	38,784
비율	2.21%	15.74%	14.95%	12.56%	14.42%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별지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곡성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곡성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68,932	2,521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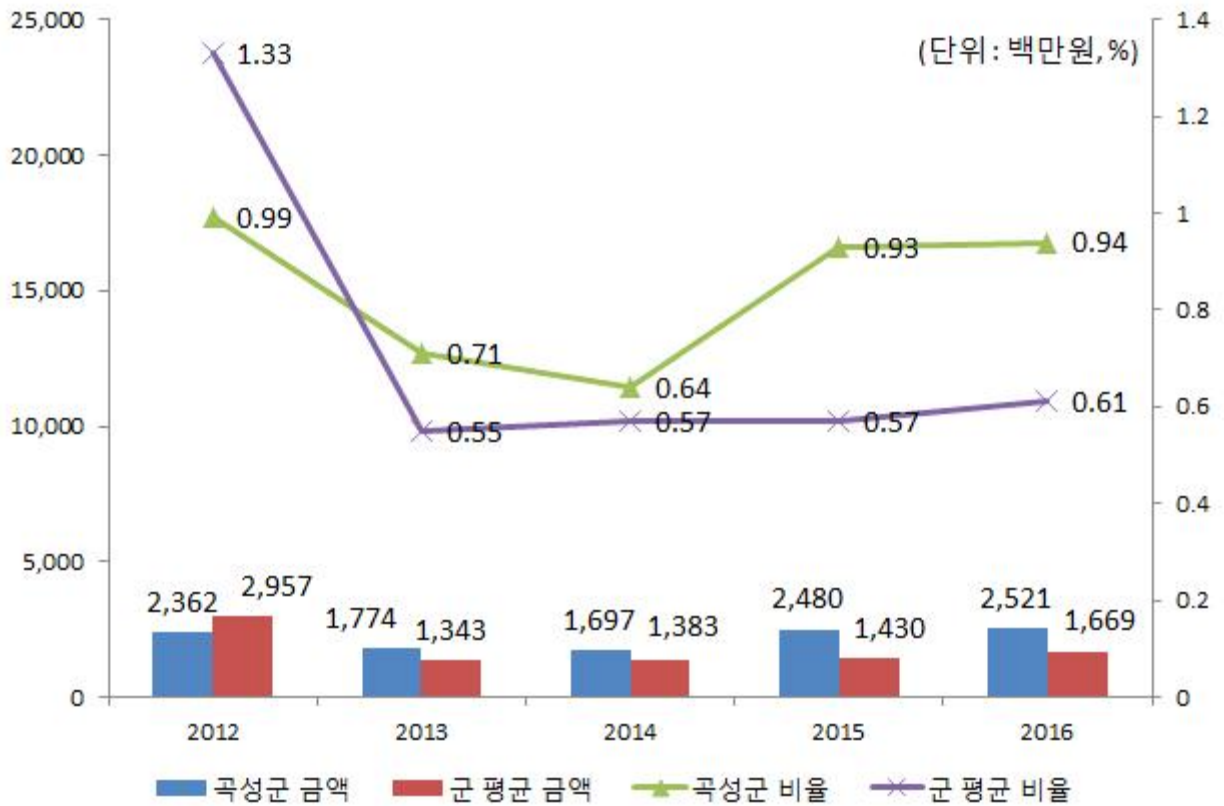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39,817	249,588	264,017	265,459	268,932
행사·축제경비	2,362	1,774	1,697	2,480	2,521
비율	0.99%	0.71%	0.64%	0.93%	0.94%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경비는 2,521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69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8백만원, 행사 관련시설비 160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